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713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김성환·임광현·박홍배

김동아 · 오세희 · 박용갑

이소영 • 박희승 • 주철현

황정아 · 강준현 · 허종식

박민규 • 이해식 • 양부남

이광희 · 김정호 · 염태영

황명선 • 허성무 • 신정훈

이재관 · 조인철 · 용혜인

채현일 • 위성곤 • 정진욱

김영배・김 윤 의원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 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 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 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 는 실정임.

한편, 당초 기초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최소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타당성은 낮다 볼 수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 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안 제27조 의3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3(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개발행위허가에서 이격거리 입지 제한은 주 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이격거리는 설치하려는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 2. 지붕형 태양광(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를 말한다)
 - 3. 자가소비용 태양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3(태양광 발전설비의 이
	<u>격거리) ① 신·재생에너지 설</u>
	비 중 태양광발전설비(태양에너
	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
	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
	다)의 개발행위허가에서 이격거
	리 입지 제한은 주거지역으로부
	<u>터 100m 이내의 거리에서만 설</u>
	<u>정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의 구
	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③ 제1항의 이격거리는 설치하
	려는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u>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u>
	형 발전사업
	2. 지붕형 태양광(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
	양광 설비를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